

학교도서관 정보공시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School Libraries

구 중 역(Jung-Eok Gu)*

목 차

1. 서론	3.3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4 교과·재량·특수활동계획·교의체험활동계획
1.2 연구목적 및 내용	3.5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1.3 관련연구	3.6 예·결산 현황
2.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이해	3.7 학교발전기금
2.1 미국의 학교정보공개 사례분석	3.8 학교용지 현황
2.2 우리나라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의미와 내용	3.9 교사(校舍) 현황
2.3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교정보공개 비교 분석	3.10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황
3. 학교도서관 정보공시 분석	3.11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3.1 학교 현황	3.12 학업성취도
3.2 직위별 교원 현황	3.13 학교도서관 현황
	4.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관련 학교정보공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학교성과보고서에서 도서관/미디어센터에 대한 정보공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학교정보공시제도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관련 13개 공시범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주체들에게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학교도서관 현황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데는 공시양식 및 지침서와 학교알리미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의 공시내용 추가, 공시정보의 가독성 및 활용성, 이용자 편리성, 공시업무 효율성 등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b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lated to the school librarie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by grasping its problems. In order to do that, we examined the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s in school libraries in Korea. The actual st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on 13 items related to school libraries was analyzed, using S High School in Seoul as a case study. In addition, in understanding the values of school libraries easily and informing them exactly through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it was judged that the forms and guides for disclosure and the level of school introduction services were somewhat insufficient. On the basis of that, some improvements were proposed, which could help to mak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in school libraries more efficient.

키워드: 학교도서관, 학교정보공시, 도서관행정, 도서관경영, 도서관정책

School Libraries,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Library Administration, Library Management, Library Policy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예산팀장(jekoo@kbsi.re.kr)

논문접수일자: 2010년 1월 31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2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137-155, 2010. [DOI:10.4275/KSLIS.2010.44.1.137]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의 진흥은 학교교육목표 및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학생·학부모, 연구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기업 등의 교육주체들에게 학교도서관 수준과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2007년 5월 25일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¹⁾(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교육정보공시제도가 2008년 5월 26일부터 도입되었다. 교육정보공시제도는 초·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정보공시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정보공시로 구분된다.

초·중등학교는 학교정보공시제도 도입으로 교육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 공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학교정보공시 주체인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²⁾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도서관 현황

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단순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주체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학교도서관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국제 및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최소 기준과도 비교 측정할 수 있는지, 학교도서관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학교도서관 현황과 가치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서 현행 정보공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2009년도 초·중등학교의 학교정보공시 항목 및 범위 중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시양식 및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정보공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초중등교육개혁법」(No Child Left Behind, NCLB)에 따른 학교정보공개제도 및 도서관/미디어센터 관련 정보공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도입된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의미와 내용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0.1.1] [법률 제9643호, 2009.5.8, 일부개정].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08.11.17] [대통령령 제21119호, 2008.11.17, 제정].
[별표 1] 초·중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교정보공개제도와 학교도서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공통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공시정보 항목 및 범위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공시양식 및 내용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그리고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정보공시 원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정보공시 양식 및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성이 있다.

1.3 관련연구

2008년 5월 26일부터 교육정보공시제도 시행 이후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시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구중억 2009)가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정보공시제도에서 학교도서관의 공시정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정보공시제도 시행 이후 교사 및 학부모 2,833명과 학교알리미 이용자 885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학교정보공시 항목별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정보공시 항목별 이용횟

수는 졸업생의 진로 현황,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장학금 수혜현황 등의 순서로 조회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호 2009).

2.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이해

2.1 미국의 학교정보공개 사례분석

미국은 2002년 1월 8일에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교육법인 NCLB를 확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주 및 교육구, 단위학교는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학교성과보고서(School Report Card)를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학교정보공개 세부 내용으로는 주요 교과(영어, 수학, 과학)에서의 학교별 학업성취 수준, 학생 집단별 학업성취 수준 등의 의무지표와 학교 출석률, 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등의 자율지표로 구분된다.³⁾

미국의 학교성과보고서에서 도서관/미디어 센터의 정보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노스캐롤라이나주⁴⁾는 도서관/미디어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학생 1인당 도서수와 평균적인 저작권 연도를 공개하고 있고 단위학교 정보와 함께 교육구 및 주의 평균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는 <표 2>와 같이 도서관/미디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수와 인터

3) No Child Left Behind - NCLB Act. [cited 2010.1.15]. <<http://www.nochildleftbehind.com/>>.

4) NC School Report Cards - Lilesville Elementary. [cited 2010.1.15]. <<http://www.ncreportcards.org/src/schDetails.jsp?Page=3&pSchCode=316&pLEACode=040&pYear=2008-2009>>.

〈표 1〉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도서관/미디어센터 정보공개 사례

2008 - 09 School Year: Access to Books and Technology	
Number of Books per Student	Students
Our School	24.9
District	23.14
State	16.78
Average Age of Media Center/Library Collection	Students
Our School	1991
District	1992
State	1993

* 출처: NC School Report Cards(<http://www.ncreportcards.org/>)에서 재구성.

〈표 2〉 뉴저지주의 도서관/미디어센터 정보공개 사례

Internet Connectivity Locations	2008-2009	
	Computers	Computers Connected to the Internet
Classroom/Instructional	85	85
Library/Media Centers	10	10
Computer Labs	23	23
All Locations	118	118

* 출처: New Jersey School Report Card(<http://education.state.nj.us/>)에서 재구성.

넷에 연결된 컴퓨터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 이름을 제외한 학교성과보고서 원시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⁵⁾

한편 캘리포니아주⁶⁾와 메릴랜드주⁷⁾는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학교성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서관/미디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학교정보 공개제도는 교육성과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주 단위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

정보공개를 추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학교공개정보의 일반 원시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주체들에게 2차 분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도서관/미디어센터 통계도 자율지표로 공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2 우리나라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의미와 내용

2.2.1 학교정보공시제도의 개념 및 의의

학교정보공시제도는 초·중·고·특수·각

5)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 Bacon Elementary School. [cited 2010.1.15]. <http://education.state.nj.us/rc/rc09/rcoptions.php?c=11;d=3230;s=065;lt=B;st=A>.

6) 2009 Maryland Report Card - Atholton Elementary. [cited 2010.1.15]. <http://mdreportcard.org/>.

7) School Reports - Chapman Hills Elementary. [cited 2010.1.15]. <http://www.ed-data.k12.ca.us/>.

중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와 관계없이 의무적,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교육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초·중등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또는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기제로 활용하는데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교육주체별 학

교정보공시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는 <표 3>과 같다.

2.2.2 학교정보공시 항목 및 범위

학교정보공시 주체인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시대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이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표 4>와 같이 학교정보공시 항목 및 범위는 학생·교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5개 항목, 39개 범위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교육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단위학교별 공시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변경 및 삭제되고 있다.⁸⁾

공시기준일은 교육통계 기준일자인 매년 4월 1일을 기본으로 하되, 공시항목 및 범위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하고, 정보공시 이후에도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 오류사항 등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표 5>와 같이 학교정보공시 주체인 초·중등학교의 장은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항목에서 학교도서관 현황을 연 1회 정기(매년 5

<표 3> 교육주체별 학교정보공시제도 의의 및 기대효과

학생·학부모	학교	교육청	학계·지역	국가
알권리 확보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촉진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	교육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촉진	학술 연구의 진흥과 정책연구 개발의 자료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a)에서 재구성.

8) 2009년 11월 19일 입법예고된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초·중등학교의 15개 공시항목, 48개 범위로 추가, 변경 및 삭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311호).

〈표 4〉 초·중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항목 및 범위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나.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교과·재량·특별활동 계획·교외체험활동 계획 다.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 학년·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가.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용지·교사(校舍) 현황 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 나. 자격별 교원 현황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다. 학교발전기금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 실시 현황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건관리 현황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다. 안전관리 현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다.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13.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입학생 현황 나. 졸업생의 진로 현황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장학금 수혜 현황 나. 동아리활동 현황 다.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라. 학교도서관 현황 마.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바.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사. 연수 참여 교원 현황 아. 사무직원 현황 자. 교직원외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 수)

* 출처: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초·중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에서 재구성.

〈표 5〉 학교도서관 현황 공시기관, 공시횟수 및 시기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총괄관리기관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도서관 현황	초, 중, 고	연1회	5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월)로 공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에 따라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공시내용으로 〈표 6〉, 〈표 7〉, 〈표 8〉과 같이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 이용 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2.2.3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전국 11,300여

학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는 학교도서관 현황 중 학생 1인당 장서수에 대해 학교급, 설립구분, 지역별(시·도 및 시·군·구)로 비교해 검색할 수 있고, 단위학교의 공시정보와 함께 전국, 시·도, 시·군·구 평균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한 단위학교 소속 지역교육청 내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도서관 현황 비교가 가능하다.⁹⁾

〈표 6〉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공시양식

(단위: 권, 개)

장서수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DVD·CD, 비디오 등)	연간증가자료수 (장서, 비도서)	장서수 합계	학생 1인당 장서수	*전체학생수
A	B	'08학년도 증가 자료수	A+B		'09.4.1 기준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

* 연간증가자료수: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구입 등으로 증가한 도서 및 비도서 자료수.

* 학생 1인당 장서수: 2009년 4월 1일 현재 장서수/2009년 4월 1일 현재 전체학생수.

〈표 7〉 도서관 운영 현황 공시양식

(단위: 명, 천원)

도서관자원봉사자(명)	도서관 예산			
	2008학년도 집행액		2009학년도 예산액	
	자료구입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천원 단위	천원 단위	천원 단위	천원 단위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

* 도서관 자원봉사자: 2009년 4월 1일 현재 학부모, 기타 지역주민 등으로 학교에 등재된 자원봉사자수.

* 자료구입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된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입비.

* 운영비: 자료구입비의 소모품비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제외).

9) 학교알리미. [인용 2010.1.15]. <http://www.schoolinfo.go.kr/>.

〈표 8〉 도서관 이용 현황 공시양식

(단위: 권, 명, 일시)

2008학년도					
**전체학생수	학생 1인당 대출 자료수	1일 평균 대출자수(명)	1일 평균 대출 자료수	도서관 개관일수	도서관 개관시간 (1일 평균)
'08.4.1 기준	'08학년도 자료	'08학년도 자료	'08학년도 자료	'08학년도 자료	'08학년도 자료

* 자료기준일: 2008년 3월 1일 ~ 2009년 2월 28일.

* 학생 1인당 대출 자료수: 2008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 자료 총수/2008년 4월 1일 현재 전체학생수.

* 1일 평균 대출자수: 2008학년도 연간 대출자 총수(학생, 교사, 주민 포함)/2008학년도 도서관 총개관일수.

* 1일 평균 대출 자료수: 2008학년도 연간 대출 자료 총수/2008학년도 도서관 총개관일수.

2.3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교정보공개 비교 분석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교정보공개제도는 모두 학교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학교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서 학업성취도를 공개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주체들에게 학교정보공개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관/미디어센터에 대한 정보는 주마다 교육여건과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위해 도서관/미디어센터의 질적 수준을 중시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보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도서관 정보는 양적 공개에 치우쳐 있으며, 학술연구 진흥 및 교육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3. 학교도서관 정보공시 분석

본 연구에서 학교도서관 정보공시 분석은 『교육정보공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학교의 39개 공시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공시범위 중에서 본 연구자가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13개 공시범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에서 제시한 공시양식과 '학교알리미' 사이트의 공시정보 사례를 기초로 하여 학교도서관 정보공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 관련 정보공시 분석 범위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3.1 학교 현황

학교 현황은 학급 및 학생수, 총교원수, 수업교사 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표 10〉과 같이 학교 현황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학급수를 기준으로 전임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표 9〉 학교도서관 관련 정보공시 실태 분석 항목

구분	공시정보 범위	학교도서관 관련 내용
1	학교 현황	학급 및 학생수
2	직위별 교원 현황	전임 사서교사 배치 여부
3	자격종별 교원 현황	사서교사 자격
4	학교용지 현황	독립 또는 복합건물
5	교사(校舍)현황	학생 1인당 면적, 도서관 수용율 등
6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열람석수
7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개방
8	교과·재량·특수활동계획·교외체험활동계획	도서관이용교육, 독서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등
9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도서관 개관 비율
10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학업성취도
11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도서관 예산
12	학교발전기금	도서관 재원
13	학교도서관 현황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 이용 현황

〈표 10〉 학교 현황 공시양식(고등학교용)

(단위: 개, 명)

구분	학생 및 학급수					총교원수	수업교사 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계			
학급수					A()	()	'09.4.1 현재 수업교사 총수 C	B/C 자동계산
학생수					B()			
학급당 학생수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

* 계: ()는 특수학급의 학급수, 학생수.

있다. 학생수는 학생 1인당 장서수, 학생 1인당 대출자료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등을 비교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겸임 사서교사, 계약직 사서 등의 학교도서관 전담 관리인력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3.2 직위별 교원 현황

직위별 교원 현황은 1교사 1직위를 기준으로 정규교원과 비정규교원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표 11〉과 같이 직위별 교원 현황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정규교원으로서 사서교사의 배치 여부를 평

3.3 자격종별 교원 현황

자격종별 교원 현황은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중등, 공통자격 중에서 1교사 1자격(최상급 자격증 1개)을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표 12〉와 같이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의 자격인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지

〈표 11〉 직위별 교원 현황 공시양식

(단위: 명)

2009학년도																
구분	정규교원										비정규교원					총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일반 교사	특수 교사	상담 교사	사서 교사	실기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계	기간제 교사	전일제 강사	시간 강사	원어민 강사	
남																
여																
합계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 조사대상: 자료기준일 현재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교사 및 시간(전일제, 원어민, 산학겸임)강사 포함.

〈표 12〉 자격종별 교원 현황 공시양식

(단위: 명)

2009학년도												
구분	교원자격											총계
	교장	교감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상담 교사	사서 교사	실기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기타	
남												
여												
합계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2009년 9월 1일(10월 공시).

* 조사대상: 자료기준일 현재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교사 및 시간(전일제, 원어민, 산학겸임)강사 포함.

않고 통합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4 교과·재량·특수활동계획·교외체험활동 동계획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도서관이용교육, 독서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등의 세부 추진 계획을 교과·재량·특별활동계획·교외체험활동계획에 포함시켜 별도양식 없이 단위 학교에서 작성한 파일 양식 그대로 공시할 수 있다.

3.5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수업일수¹⁰⁾는 최소한 198일 이상의 연간수업일수를 공시하고 있다.

〈표 13〉과 같이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수업일수는 실제 도서관 개관일수 비율을 비교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6 예·결산 현황

예·결산 현황은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

10) 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하되, 주5일제 수업 등의 사유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표 13〉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공시양식(고등학교용)

2009학년도		
수업일수	1학년	
	2학년	
	3학년	
주당 총수업 시수		
수업 교사 총수		'09년 4월 1일 현재 수업을 하는 교사 총인원수
주당 평균 수업시수(교사 1인당)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여 각각 당기예산과 전기결산의 목별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표 14〉와 같이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 과목은 세입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부모부담수입(학교운영지원비), 자체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접수입),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 등이 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인건비(교직원, 기타)와 학교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 예비비 등이 있다.

단위학교는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학교운영비(관)-학교운영비(항)-교수·학습활동비(목)에 세목으로 도서구입 및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과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편성·집행지침에서 학교기본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학교도서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 예산의 성장성, 안정성, 건전성, 균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원별 현황, 예·결산의 오차율 등도 비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7 학교발전기금

〈표 15〉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직전 회계연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된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의 접수 및 지출 내역¹¹⁾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세부 공시내용에서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에서 도서구입비로 얼마나 조성·운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3.8 학교용지 현황

학교용지 현황은 교사대지, 체육장, 부속토지, 교사연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교사대지는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용지를 말한다.

〈표 16〉과 같이 학교용지 현황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독립건물 형태의 학교도서관 부지 면적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1) 학교발전기금에서 현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접수 및 지출 건수에 모두 기재된 것이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이자발생액 등을 포함한다.

〈표 14〉 국·공립 학교회계 예·결산서 공시양식

(단위: 천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과 목			금액	과 목			금액
관	항	목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인건비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직원인건비	
		1. 학교교육비				1. 교원연구비	
		2. 목적사업비				2. 제수당	
		3.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 학부모부담수입				2. 기타직인건비			
		1.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1. 학교운영지원비				2. 비정규직 보수	
		2. 수익자부담경비				3. 퇴직적립금	
		1. 현장학습비					
		2. 학생수련활동비					
		3. 학교급식비					
		4.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3. 자체수입				2. 학교운영비			
		1. 사용료 및 수수료				1. 학교운영비	
		1. 사용료				1. 학생복리비	
		2. 수수료				2. 교수학습활동비	
		2. 잡수입				3. 공통운영비	
		1. 잡수입				4. 업무추진비	
						5. 시설비	
4. 과년도수입				3. 수익자부담교육비			
		1. 과년도수입				1. 수익자부담교육비	
		1. 과년도수입				1. 현장학습비	
5. 학교발전기금전입금						2. 학생수련활동비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3. 학교급식비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4.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6. 보조금및지원금						5. 졸업앨범비	
		1. 보조금및지원금				6. 청소년단체활동비	
		1. 보조금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2. 지원금					
7. 이월금				4. 예비비			
		1. 이월금				1. 예비비	
		1. 이월금				1. 예비비	
세 입 합 계				세 출 합 계			

* 자료기준일(5월): 2009학년도 본예산서(2009년 3월 1일).

* 자료기준일(10월): 2008학년도 결산서(2008년 3월 1일 ~ 2009년 2월 28일).

〈표 15〉 학교발전기금 공시양식

(단위: 천원, %)

2008학년도							
구 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기타	합 계
접 수	접수건수						
	금 액						
지 출	지출건수						
	금 액						

* 자료기준일: 2008년 3월 1일 ~ 2009년 2월 28일(5월 공시).

〈표 16〉 학교용지 현황 공시양식

(단위: m²)

교지면적			부속토지	합 계	교사연면적
교사대지	체육장	계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3.9 교사(校舍) 현황

교사 현황은 교실, 도서관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도서실(관)은 교사 현황 중에서 교수·학습공간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표 17〉과 같이 교사현황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면적을 교실 수 단위로 공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일반교실 면적(1실 66m²)을 적용할 경우 학교도서관 면적, 학생 1인당 면적, 도서관 수용율 등을 추정할 수 있다.

3.10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황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관, 강당,

기숙사, 도서실(관), 매점, 영어체험교실, 진로상담실 등 다양한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표 18〉과 같이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황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도서실(관)의 총좌석수를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학생수 대비 열람좌석수 비율을 비교 측정할 수 있다.

3.11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종류, 이용수칙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표 19〉와 같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지역주민 개방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7〉 교사 현황 공시양식

(단위: 실)

교수/학습공간						보건/위생공간			급식 공간	기숙사 실수	기타 공간	비고 (건축 년도)
정규 교실	도서실 (관)	시청 각실	수준별 교실 (영어, 수학)	특별 교실	기타 교실	교원 편의 시설	관리/ 지원 공간	체육/ 집회 공간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교실 수: 0.5실도 1실로 기재.

〈표 18〉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황 공시양식

(단위: 실, 명, 개)

체육관	강 당	기숙사 수용인원	도서실 총좌석수	매 점	영어체험 (전용)교실	진로상담실	기 타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표 19〉 학교시설 개방 여부 공시양식

(단위: 원)

시 설	운동장	체육관	강 당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개방 여부						
사용료(시간당)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3.12 학업성취도

학년별·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009년부터 초·중등학교 단위학교별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학기말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공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및 평가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

달)은 2010년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는 2011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학교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응시 현황 및 평가결과는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¹²⁾

12)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 “학교도서관의 직원과 장서 규모는 학업성취도의 예측변수이고, 표준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학생들은 경제적인 요소와 같은 다른 요소에 상관없이 학교도서관의 직원이 많고 더 많은 장서를 갖춘 학교 출신들이 경향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IFLA/UNESCO 2002).

3.13 학교도서관 현황

3.13.1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표 20〉과 같이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에 관한 공시정보 사례를 살펴보면 장서수, 연간증가자료수, 학생 1인당 장서수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전국, 시·도, 시·군·구별로 평균을 제공하여 시·도, 시·군·구, 단위학교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까지 15권 이상으로 장서 확충을 추진(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9b) 하는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학교도서관 개선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협회(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자료 종류별 학생 1인당 기본자료수, 연간증가수, 장서 폐기율은 물론 도서관자료의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을 비교 측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주체들이 학교 또는 학교도서관 규모를 고려하여 검색 조건에 부합한 정보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3.13.2 도서관 운영 현황

〈표 21〉과 같이 도서관 운영 현황에 관한 공시정보 사례를 살펴보면 도서관자원봉사자와 도서관 예산을 함께 공시하고 있다.

도서관자원봉사자는 국가 또는 지역수준에서 단위학교의 도서관자원봉사자 활용 비율을 비교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예산 현황과 별도로 분리하고 학

〈표 20〉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공시정보 사례

(단위: 권, 개)

2009학년도					
장서수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DVD·CD, 비디오, 기타)	연간증가자료수 (장서, 비도서)	장서수 합계	학생 1인당 장서수	전체학생수
43,865	4,141	5,527	48,006	33.9	1,417
○○군 학생 1인당 장서수			17.3		
○○시 학생 1인당 장서수			12.1		
전국 학생 1인당 장서수			16.9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표 21〉 도서관 운영 현황 공시정보 사례

(단위: 명, 천원)

도서관자원봉사자(명)	도서관 예산			
	2008학년도 집행액		2009학년도 예산액	
	자료구입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101	8,886	1,452	14,526	4,641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교도서관 전담 관리인력을 신설하여 전임 사서교사, 겸임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직 사서, 순회사서 등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전임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예산은 직전연도 집행액과 당해연도 예산액을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예산 중에서 자료구입비 비율,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비율 등을 비교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예산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공시되지 않아 단위학교에서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서관 예산으로 얼마나 편성·운용하고 있는지 정책상황을 점검할 수 없다. 또한 학교회계 세입예산에서 학교도서관의 재원 조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3.13.3 도서관 이용 현황

〈표 22〉와 같이 도서관 이용 현황에 관한 공시정보 사례를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 현황은 직전 회계연도의 학생 1인당 대출 자료수, 1일

평균 대출자수, 도서관 개관일수, 도서관 1일 8시간 평균 개관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표 23〉과 같이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에 관한 공시정보의 수업일수를 활용하여 도서관 개관 비율¹³⁾을 비교 측정하여 방학중 도서관 개관 등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부가가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도서관활용수업, 장서회전을 등을 비교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등과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서비스 비율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없다.

〈표 23〉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공시정보 사례

2008학년도		
수업일수	1학년	204
	2학년	204
	3학년	204
	4학년	204
	5학년	205
	6학년	204

* 자료기준일: 2009년 4월 1일(5월 공시).

〈표 22〉 도서관 이용 현황 공시정보 사례

(단위: 권, 명, 일시)

2008학년도					
전체학생수	학생 1인당 대출 자료수	1일 평균 대출자수(명)	1일 평균 대출 자료수	도서관 개관일수	도서관 개관시간 (1일 평균)
1,599	57.6	350	350	263	8

* 자료기준일: 2008년 3월 1일 ~ 2009년 2월 28일(5월 공시).

13) 예시: 1학년 수업일수 대비 도서관 개관 비율 128.9% = 263(도서관 개관일수)/204(1학년 수업일수)*100.

4. 결론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등의 교육적·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학교도서관 정책, 법적·제도적 장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육주체들에게 학교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정확히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정보공시제도에서 초·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관련 공시양식 및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정보공시 항목 및 범위에서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공시내용은 일반현황, 자료, 시설·설비, 인적자원, 예산, 서비스(정보, 교육, 협력) 등의 6대 영역을 중심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공시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개정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에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 개정을 통해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관이용교육, 독서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등의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및 현황에 대한 정보공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등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학교규모와 특성이 유사한 다른 학교, 시·군·구, 시·도, 국가 및 국제적 학교도서관 기준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학교 알리미’ 사이트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4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단위학교가 작성한 학교도서관 현황 조사표를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전자파일로 탑재하여 교육주체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시정보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술연구 진흥 및 교육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주체들에게 공개범위 내의 학교정보공시 원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도서관 관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는 교육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공시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학교정보공시제도는 교육주체들이 학교도서관 현황과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고 비교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효율적으로 참여, 협력,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인적자원부. 2002a. 『학교도서관 시설 설비 계획 및 모형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2] 교육인적자원부. 2002b.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3] 교육인적자원부. 2008. 『2008년 학교도서관 정책연구학교 추진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4] 교육과학기술부. 2009a. 『2009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5] 교육과학기술부. 2009b.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6] 교육과학기술부. 2009c.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7] 교육과학기술부. 2010a.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8] 교육과학기술부. 2010b. “학교알리미” [online]. [cited 2010.1.15].
〈<http://www.schoolinfo.go.kr/>〉.
- [9] 구중역. 2009. 대학도서관의 정보공개 및 공시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327-351.
- [10]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09a. 『2009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09b.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13] 이용호. 2009. 『학교정보공시 성과와 발전과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4]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도서관 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5] Education Data Partnership. [online]. [cited 2010.1.15]. 〈<http://www.ed-data.k12.ca.us/>〉.
- [16] IFLA/UNESCO. 2002. “The IFLA/UNESCO School Library Guidelines.” [online]. [cited 2010.1.15]. 〈<http://archive.ifla.org/VII/s11/pubs/sguide02.pdf>〉.
- [17] Maryland Report Card. [online]. [cited 2010.1.15]. 〈<http://mdreportcard.org/>〉.
- [18] No Child Left Behind - NCLB Act. [online]. [cited 2010.1.15].
〈<http://www.nochildleftbehind.com/>〉.
- [19] NC School Report Cards. [online]. [cited 2010.1.15]. 〈<http://www.ncreportcards.org/>〉.
- [20]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 Bacon Elementary School. [online]. [cited 2010.1.15]. 〈<http://education.state.nj.us/rc/>〉.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Education, 2002a. *Plan and Model Plan of School Library Facilities*.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 [2] Ministry of Education, 2002b. *General Plans for Activating School Librarie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3] Ministry of Education, 2008. *Plan of Policy Research School of School Library of 2008*.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a. *Form and Guide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of 2009*.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5]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b. *A Basic Plan of School Library Improvemen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6]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c. *Plan for Activating School Reading Education and Librarie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7]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a. *A Basic Plan of National Student Assessment of 2010*.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b.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online]. [cited 2010.1.15]. <<http://www.schoolinfo.go.kr/>>.
 - [9] Jung-Eok Gu.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Disclosure of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327-351.
 - [10]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 *A Comprehensive Plan for Library Development: 2009~201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11]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09a. *Basic Guidelines of School Accounting Budgeting of 2009*.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12]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09b. *A Standard for School Library Facilities & Materials*.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13] Young-ho Lee. 2009. *The Outcome of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Its Development Strategies*. Seoul: Korea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14]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 Library Guidelin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